KTB터미녈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

투자계약서

- 투자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 집합투자업자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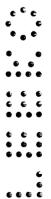
2020년 10월 13일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1조 (계약의 목적)	2
제5조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의 매입)	6 6 7
제3장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제14조(수익증권의 처분)	
제15조(수익자총회)	
제16조(집합투자업자의 변경)제17조(집합투자업자의 독립적 운용)제18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제6장 투자신탁의 계산	13 13
제19조(회계)	13 14
제22조(투자신탁의 존속기간)	15
제24조(진술 및 보증)	16 16 17 17
MINION I BEY CO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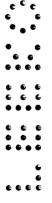


별지 1 매입약정금액 및 약정지분비율

별지 2 매입약정인수약정서(양식)

별지 3 매입약정금액 증액약정서(양식)

별지 4 양수확약서(양식)



이 투자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신탁인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41호"(이하 "이 투자신탁" 또는 문맥에 따라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 및 투자 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1. 투자자

-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이하 "제1종 수익자")
-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연지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이하 "제2종 수익자")

2.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1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케이티비자 산운용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1) 이 계약은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적 출자자인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가 PSA와 합작하여 설립할 합작투자법인(joint venture)에 자본금을 납입할 목적으로, 투자신탁이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인 HMM TERMINAL SINGAPORE(HTS) PTE. LTD(이하 "투자대상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Redeemable Preferred Share (이하 "RPS"라 한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및 집합투자업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수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고, 투자자를 동법 제24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로 운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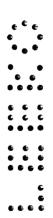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신탁계약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자본시장법령"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밖에 이에 따라 제정되는 모든 관계법규를 의미하며, 이 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것 및 이를 대체하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2. "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정도로 경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 당사자에 의하여 통제·지시 받거나 또는 각 당사자를 통제·지시하는 자, 또는 각 당사자와 함께 동일한 자로부터 경영상의 통제·지시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통제·지시"라 함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 및 정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계약위반당사자"라 함은 제28조 제1항에서 정의되는 바에 따른다.
- 4. "기준가격"이라 함은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 5. "**납입기일**"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입대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하는 날로서 제8조에서 정한 날을 의미한다.
- 6. "납입불이행당사자"라 함은 제10조 제1항에서 정의되는 바에 따른다.



- 7. "당사자"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 계약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 8. "매입약정금액"이라 함은 각 투자자가 이 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미 매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되, 동 금액은 수 익증권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투자자의 매입약정 금액은 별지 1의 '매입약정금액' 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 9. "매입약정기간"이라 함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당시에 매입한 것 이외에 제6조에 따라 추가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으로서 제7조에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 10. "매입약정인수인"이라 함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의 수익증권을 매입 및 인수하게 된 자를 의미한다.
- 11. "매입약정총액"이라 함은 투자자들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매입약정금액(이 미 매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12.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한다.
- 13. "수익증권의 종류"라 함은 각 투자자가 매입하기로 약정한 수익증권의 종류를 말하고, 별지 1의 '수익증권의 종류' 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으며, 각각 "제1중 수익증권" 및 "제2종 수익증권"이라 한다.
- 14. "신탁계약"이라 함은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의 신 탁계약을 말하며, 이 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수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된 이후의 것 을 의미한다.
- 15. "신탁업자"라 함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말한다.
- 16. "약정지분비율"이라 함은 매입약정총액에 대한 각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투자자의 약정지분비율은 별지 1의 '약정지분비율' 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 17.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을 제외한다.
- 18. "지분비율"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미 납입한 매입대금의 합계액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각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매입대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 19.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말한다.
- 20. "**투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 투자대상회사가 발행한 RPS에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21. "**투자자**"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계약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당 사자를 포함한다) 중 집합투자업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 22. "**투자대상자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투자대상회사가 발행한 RPS나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채권, 지연손해금채권, 손 해배상금채권 등 일체의 자산을 의미한다.
- 23. "판매회사"라 함은 NH투자증권을 의미한다.

제3조 (신탁계약의 작성 및 이 계약과의 관계)

- (1)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그와 같이 체결된 신탁계약의 내용을 이 계약의 일부로 삼는다.
- (2)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 1. 이 계약의 수정, 법령의 개정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 또는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2. 투자자 전원이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 (3) 신탁계약의 조항의 내용 중 이 계약의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법령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4조 (투자신탁의 설정)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령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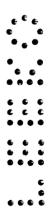
제2장 수익증권의 매입

제5조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의 매입)

- (1)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 투자금액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며, 신탁원본액은 최초 설정 요청일로부터 최소 이 (2)영업일 이전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에게 고지 한다.
- (2) 신탁의 수익증권은 기명식·무액면으로 한다.
- (3) 각 투자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른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액 중 각 투자 자의 약정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회사에 금전으로 납입하고, 이 투자 신탁의 최초 설정 시 발행된 수익증권을 각 투자자별 수익증권의 종류 및 약정 지분비율에 따라 매입한다.

제6조 (추가 매입)

- (1)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약정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매입약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8조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각 투자자별 수익증권의 종류 및 약정지분비율에 따라 수익 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투자자는 수익증권 추가 발행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
 - 2. 이 투자신탁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보수,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 등의 지급의무 및 이 투자신탁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 (2)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느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매입약정금액을 증액한 투자자(이하 "**증액당사자**"라 한다)에 대한 투자신탁을 추가설정하고, 증액당사자는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으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각 투자자별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투자자는 수익증권 추가 발행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3) 각 투자자는 특정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매입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4) 어느 수익자가 수익증권 매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납입기일 이전 에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이는 납입기일에 납입한 것으로 보며, 납입기일 이전 또는 당일에 그 수익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 납입한 부분은 본 계약상의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미리 납입하거나 초과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익도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7조 (매입약정기간)

- (1) 매입약정기간은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일(1)년이 경과한 날 또는 매입약 정금액 전액이 매입 완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2) 매입약정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매입약정금액 전액의 납입여부에 관계 없이 투자자들의 수익증권 매입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투자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약정기간 이후에도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한도 내에서 각 호의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투자자별 수익증권의 종류 및 약정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한다.
 - 매입약정기간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
 - 2. 투자신탁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보수,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 등 운전자금 및 투자신탁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상당한 금액

제8조 (매입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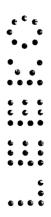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입기일로부터 일십(10) 영업일 전까지(다만, 최초 납입기일의 경우 이(2)영업일 이전까지) 판매회사에게 통보하여 투자자들에게 납입기일이 고지되도록 한다. 이 경우 각 투자자는 정해진 납입기일에 당해 매입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고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신탁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매입비율)

- (1) 각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시, 수익증권 매입 후 각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약정지분비율대로 유지되고 각 투자자별 매입 수익증권의 종류는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되도록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 (2)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정해진 매입대금 납입기일까지 약정지분비율에 따른 매입에 필요한 내부수권 절차 및 관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매입의무의 불이행)

(1)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이하 "납입불이행당사자"라 한다)는 매입대금 납입기일로부터 일십 (10)일째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이하 "추후납입일"이라 한다)까지 ① 미납된 매입대금과 ② 납입기일로부터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까지 미납된 매입대금에 연 10%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②의 금액은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의 매입약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나머지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계약상 나머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써 납입불이행당사자에게 위 ①과 ②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요청한다.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투자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납입일까지 기다릴 경우 투자 일정에 따른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



지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계약상 나머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써 추후납입일 전이라도 제2항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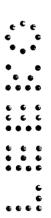
- (2)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미납한 매입대금을 추후납입일(집합투자업자가 추후 납입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입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나머지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계약상 나머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써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당시 보유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함께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매입 및 인수하거나 또는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은 매입 및 인수하거나 또는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만을 인수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매입제안에 응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매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 또는 인수하는 비율은 매입제안에 응한 투자자들 간의합의로 정한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들이 매입 또는 인수하는 기간은 납입불이행당사자의 추후납입일로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내로 한다.
 - 1. 납입불이행당사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 매입제안 당시의 기준가격에서 10% 할인한 가격
 -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 실제 매입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3)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매입대금 중 미납입된 금액이 여전히 있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그 수익증권을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당시 보유하는 수익증권과 함께, 투자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 및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조치의실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불이행당사자의 이 계약에 따른 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매입의무 및 투자자로서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기타의무는 매입약정인수인에게 이전한다.



- 납입불이행당사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 매입제안 당시의 기준가격에서 최대 10%까지 할인한 가격
- 2.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 실제 매입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4) 투자자들은 이 계약으로 집합투자업자에게 납입불이행당사자 및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① 제2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보유한 수익증권과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그 매입 및 매입제안에 응한 당사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② 제3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보유한 수익증권과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입약정인수인을 선정하고 해당 매입약정인수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해당 매입약정인수인으로 하여금 별지 2 양식에 따른 매입약정 인수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계약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각 부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러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집합투자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는 그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의 매입 및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는 해당매입대금 납입기일로부터 해당매입대금이 실제로 납입된 날까지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그매입약정금액의 비율대로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매매,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납입하지아니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의 매입과 이계약상권리 및 의무의 양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기존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 증액)

(1) 투자신탁 설정 후 기존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 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투자자 전원이 각 매입약정비율에 따라 매입약정금
 액을 증액하는 방법
- 2.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어느 투자자가 자신의 매입약정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 (2) 제1항에 따라 매입약정금액을 증액한 투자자는 그와 같이 증액된 매입약정금액 으로 이 계약 체결 시부터 매입약정을 한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제1항에 따라 매입약정금 액을 증액하는 투자자와 별지 3 양식으로 매입약정금액 증액약정을 체결할 권 한을 부여한다.

제12조 (수익증권 매입권 등)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본 계약에 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가 있다.
- (2) 수익자는 자본시장법령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증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매입의무의 위반)

- (1) 어느 투자자가 본 장에서 정한 매입의무를 위반한 경우(납입불이행당사자가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추후납입일까지 미납된 매입대금을 전부 납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약벌로서 해당 미납된 매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을 실제 매입 또는 인수한 투자자들에게 그 매입 및 인수비율에 따라 각 지급하여야 한다.
- (2) 납입불이행당사자가 약정지분비율에 따른 매입을 불이행한 금액은 이 계약에 따라 매입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동의, 이의 없음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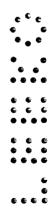


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 매입약정총액 및 해당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에서 제외한다.

제3장 수익증권에 관한사항

제14조 (수익증권의 처분)

- (1) 각 투자자는 매입약정기간 동안 그가 보유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그 밖에 수익자의 변 동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본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률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처분 등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을 제외한 투자자 전원이 해당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 (2) 제1항 단서에 따라 어느 투자자(본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가 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양도인의 이 계약상 매입 약정금액에 대한 잔여 매입의무 중 양도인이 처분 당시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수에 대한 처분 등의 대상인 수익증권의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 매입의무는 당해 처분 등의 상대방(본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다만, 양도인을 제외한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 계약상 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매입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부담하고 양수인이 그 나머지 매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매입의무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로서 참여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지 4 양식의 '양수확약서'를 투자자들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본 항에 따라 별지 4 양식의 '양수확약서'에 대하여 승낙할 권한을 부여한다.



- (3) 이 계약상의 제한이나 절차에 위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수인은 투자신탁 또는 다른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취득에 따른 권리, 이익 또는 자격의 주장을 할 수 없고,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인은 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에 대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및 매입약정기간이 종료되어 수익증권의 처분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19조 제8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양수인을 적격투자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약정기간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어느 일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단독으로, ②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어느 일방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매입의무(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매입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입의무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15조 (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 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자산의 운용

제16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은 투자신탁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 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7조 (집합투자업자의 독립적 운용)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은 수익자들의 수익성 추구를 목표로 한다.
- (2) 이 계약은 각 투자자들이 적시에 매입약정금액을 납입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계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업무 중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을받지 않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제18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에 한하여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 투자신탁을 운용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계산

제19조 (회계)

투자신탁의 회계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투자신탁의 보수)

투자신탁의 보수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익분배등)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시, 종료일 현재 투자자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제1종 수익증권 및 제2종 수익증권의 각 신탁원본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결정에 따라이익금 전체를 투자신탁 내에 유보할 수 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결정에 따라 투자 신탁 회계기간 종료 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 금액 (이하 "이익초과 분배금"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3)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임시 결산을 통하여 이익금 및 이익초과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본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계법령과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익자들에게 배분한다.
 - 1. 제1종 수익자에 대한 분배금의 누적액이 제1종 수익증권의 신탁원본에 해당할 때까지 제1종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 2. 제2종 수익자에 대한 분배금의 누적액이 제2종 수익증권의 신탁원본에 해당할 때까지 제2종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분배 후 나머지 금액은 제1종 수익증권 및 제2종 수익증권의 각 신탁원본에 비례하여 제1종 수익자 및 제2종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 (5) 투자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분배는 현금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 해지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전원동의에 의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현물로 수익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본 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6)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원은 다시 투자하지 아니하며 제1항 내지 제5 항 및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22조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그밖에 이계약에 관한사항

제24조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한다.

-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법 또는 그 설립준거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따른 영업 또는 행위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
-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계약은 그 제반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를 적법, 유효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다.
- 3. 각 투자자는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될 자격이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자격을 유지한다.



- 4. 각 당사자나 그 관계인은 신탁계약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 없다.
- 5. 각 당사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계약 그 밖에 거래행위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아니하고 장래에 그러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 6.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을 결정함에 있어 신탁계약 및 이 계약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자료 또는 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 나 정보에도 의존한 바 없다.

제25조 (확약)

각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각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제반 인허가를 획득하거나 정부에 대한 제반 신고, 등록, 통지 등을 함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등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전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각 당사자는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위원 회를 포함한 정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모든 승인, 동의, 합의 또는 면제를 획 득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이 계약의 각 당사자가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얻은 일체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목적상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각 당사자의 수익자, 임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거래관계의 상대방 등에 의하여 정보가 누설된 경우에 해당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감독상 그 밖에 여하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해당 당사자 자신이 위약행위를 한 경우에 준하여 이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①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자료나 정보인 경우 또는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계약의 발효일 및 종료)

- (1)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시로부터 즉시 유효하며,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
-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즉시 종료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등록 등 대한민 국 정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지 못하거나 그러한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 취소되거나 그러한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 실효되는 것으로 확정된 때(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 등을 중도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포함)
 - 3. 투자자 전원이 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때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종료시점에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 와 의무는 이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

- (1) 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당사자(이하 "계약위반당사자"라 한다)는 관 계법령의 제한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위반당사자는 해당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위반사항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다른 당사자(이하 "**손해배상청구권자**"라 한다)에 대한 이 계약상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에 비용 등(추가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 손해배상청



구권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신탁으로부터 모든 지급이나 금전의 분배를 받을 권리(분배금, 상환금 그 밖에 수익자로서 투자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금전청구권을 포함하며, 이하 "포기대상채권"이라 한다) 중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 부분을 포기하며, 그와 같이 포기된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귀속한다(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청구권 금액의 비율로 귀속한다).

- 2. 집합투자업자는 포기대상채권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 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포기대상채권 전체의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 (2) 투자신탁의 해지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제1항에 따른 책임은 존속한다.
- (3)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도 계약위반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제13조에 따른 위약벌 등 이 계약상 또는 대한민국 법령상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들을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해결)

- (1)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먼저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소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동 소송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3) 당사자들은 제2항에 규정한 절차와 별도로 어느 때라도 관할권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그 밖에 법적 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 사비용 등 동 법적 절차나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상대 방 당사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

제31조 (그 밖의 조항)

(1)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따른 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정부의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이라고 투자자 전원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약정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J

(2) 완전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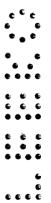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은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당사자들간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협정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3) 양도금지

이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이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하여서만 양도될 수 있다.

(4) 법령의 개폐

이 계약에 인용된 법령의 조항은 동 법령의 개폐가 있은 후에는 그 개정법령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법령을 대체한 법령 중의 해당 조항을 의미한다.



(5) 조항의 가분성

이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계약서 또는 해당 규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유효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6) 조항의 계속성

어떤 당사자에 대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권리의 포기

이 계약서의 어느 규정에 관하여 엄격한 또는 적시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러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이 성립되지도 않는다. 또한 이전에 그 권리의 포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후의 불이행(성격이 유사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한 권리의 포기나 금반언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8) 승계인 및 양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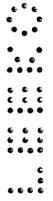
이 계약의 모든 규정들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 당사자들의 승계인과 양수인들에 대하여도 유효하고 이들에게 완벽한 구속력을 가진다.

(9) 통지 등

이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보고, 동의, 제의나 그 밖에 문서 또는 서류는 이 계약서의 첫 부분에 명시된 주소로 수 령권이 있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거나 팩시밀리로 전송되고 수령확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전달되면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하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여백)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13일

투자자:

한국해양진흥공사

669-82-0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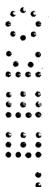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 금 용 성명:황호선 금융투자,금융지원

직위 : 사장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13일

투자자: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성명 : 배 재 훈

직위 : 대표이사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13일

집합투자업자: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성명:김태우

직위 : 대표이사



별지 1

매입약정금액 및 약정지분비율

(단위: 원)

투자자	매입약정금액	약정지분비율	수익증권의 종류
한국해양진흥공사	KRW 19,602,000,000 (SGD 23,016,000 상당 원화금액)	80%	제1종 수익증권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KRW 4,901,000,000 (SGD 5,754,000 상당 원화금액)	20%	제2종 수익증권
합계	KRW 24,503,000,000 (SGD 28,770,000 상당 원화금액)	100%	

* 매입약정금액은 KRW를 기준으로 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설정 이(2)영업일 전 납입 요청공문을 통해 정확한 원화 매입약정금액 확정 고지 예정



별지 2

매입약정인수약정서 (양식)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인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이하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투자하기를 희망하며, 이 약정서에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투자신탁의 투자자들간에 2020년 10월 13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당사가 투자신탁에 대한 []원의 [제1 종/제2종] 수익증권 매입약정액을 [*납입불이행당사자명*]로부터 인수하고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당사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사는,

- 1. 당사가 [납입불이행당사자명]로부터 양수한 투자신탁의 [제1종/제2종] 수익증권의 총액과 신규로 매입한 [제1종/제2종] 수익증권의 총액을 포함한 [제1종/제2종] 수익증권 매입약정금액 금 [1원음.
- 2. 본 약정서 승낙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기로 하며
- 3.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상호:

대표자: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의 집합투자업자인 케이티비자산 운용 주식회사는 투자계약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 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가 [납입불이행당사자명]로부터 양 수한 [제1종/제2종] 수익증권의 총액과 신규로 매입한 [제1종/제2종] 수익증권의 총액을 포함한 [제1종/제2종] 수익증권 매입약정금액 금[]원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투 자계약의 당사자로 됨을 수락합니다.

상호: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자:



별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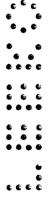
매입약정금액 중액약정서 (양식)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인 'KTB터미널인베스 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이하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자들간에 2020년 10월 13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매입약정금액을 금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니다.

[]년[]월[]일

상호:

대표자: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의 집합투자업자인 케이티비자산 운용 주식회사는 투자계약 제11조 제3항에따라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 자신탁제41호'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가 투자계약상 매입약정금액을 금 []로 증액 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상호: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자:



별지 4

양수확약서 (양식)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인 'KTB터미널인베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1호'(이하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투자하기를 희망하며, []년 []월 []일 []로부터 투자신탁의 [제1종/제2종] 수익증권 []좌를 양수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양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투자신탁의 투자자들간에 2020년 10월 []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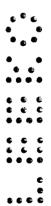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당사가 투자회사의 수익증권 []좌를 []로부터 양수하고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당사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사는,

- 1. 당사가 []로부터 양수한 [제1종/제2종] 수익증권 매입약정금액은 금[]원(양수한 수익증권의 총액 포함)으로 하며,
- 2.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상호:

대표자: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투자계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가 []로부터 금[]원 (양수한 수익증권의 총액을 포함)의 [제1종/제2종] 매입약정 금액을 양수함으로써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됨을 수락합니다.

상호 :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자:

